

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

공 시 최 고

사 건 2007카공 29 공시최고

신청인 전 정 숙

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18-6

신청인의 이 사건 공시최고신청을 허가하는 바, 아래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 최고 기일인 2007. 12. 17. 14:00 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.

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.

2007년 9월 13일

판 사 이 동 철

<증서의 표시>

종 류 : 자기앞수표

번 호 : 가가 19467318~19467322(5매)

액 면 : 금100,000원

발행일 : 2007년 9월 3일

발행인 : 거창축협가조지소